

[별표 1]

수수료의 기준(제7조 관련)

항 목	내 용
기본료 (지식재산권 유지 수수료)	○ 지식재산권 수수료(제3조에 따른 지원이 있는 경우 해당 지원 금액을 제외한 금액) ○ 연차등록 관리 비용 ○ 기본신탁 관리 비용
보호관리 수수료	○ 침해 모니터링 비용(상시) ○ 분쟁 발생 시 소송 비용
* 이전 수수료	○ 거래 규모의 일정 비율 이하에서 신탁자가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한다.
기술료 징수 대행 수수료	○ 라이선싱 관리 및 현장 실사(實査)에 따른 비용
마케팅 대행 수수료	○ 마케팅 착수금 ○ 마케팅 착수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이전 수수료에 일정 비율을 부가하여 적용
기술평가 수수료	○ 기술신탁 선별평가 비용 ○ 양도 시 기술가치 평가비

* 이전 수수료[마케팅 대행 수수료 선납(先納) 시]

등급	거래 규모(기술이전 금액)	수수료 비율
1	1억원 이하	기술이전 금액의 15퍼센트
2	1억원 초과 ~ 3억원 이하	기술이전 금액의 13퍼센트
3	3억원 초과	기술이전 금액의 11퍼센트

※ 등급 간 수수료 비율은 거래 규모에 따라 누진 적용

* 이전 수수료(마케팅 대행 수수료 미납 시)

등급	거래 규모(기술이전 금액)	수수료 비율
1	1억원 이하	기술이전 금액의 17.5퍼센트
2	1억원 초과 ~ 3억원 이하	기술이전 금액의 15퍼센트
3	3억원 초과	기술이전 금액의 13퍼센트

※ 등급 간 수수료 비율은 거래 규모에 따라 누진 적용